◉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8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 자에 대한 자동차대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대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면허 진위성(위·변조) 및 유효성(면허정지·취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탁(안 제38조제3항제9호의2)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면허 진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

4.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2년 8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19·3822, 팩스: 044-201-5581, nan4ever@korea.kr)